

개설되지 않아 주민불편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 교통난, 그리고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조속히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성산동 120번지에서 상암동 773번지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그 동안 아파트 재건축등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인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주민의 편의증진은 물론, 일산 신도시등 서울 서북부지역의 개발로 수색로와 성심병원 앞 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난을 분산하고 지역 간선 도로의 확보 차원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주민 진정등으로 집행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구간의 개설이 예산문제등 제반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생활을 고려한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 설득하여 청원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평소의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요 지 서

접수년월일	1995. 5. 2.		접수번호	
청원인	주 소	마포구 중동 49-12	성 명	이기순외236인
소개의원	윤 명 규 의원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건 명	경의선로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			

요 지

본 청원은 성산2동 지역 현황으로 보아 밀집된 아파트 주민과 날로 증가되는 인수로 인하여 현재 4만 5천 인구에 육박하는 실정으므로, 인접된 상암동과 수색방면 그리고 모래내(은평, 서대문)에 생활근거를 둔 주민의 불편은 물론 마을 전체로 보아 한면이 경의선 철도가 가로 질러 있어 차량통행이 불가하므로 성산동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성산동을 통과하는 많은 이동 차량이 폭주함으로써 특히 성심병원앞 로타리에서 계속되는 정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임.

성원주택재건축을 위한 도로개설 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1995. 5. 4.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청원인주소 : 마포구 성산2동 123-23
성명 : 윤만우외 29인
- 나. 소개의원 : 김유현 의원
- 다. 접수일자 : '95. 5. 2.

라. 회부일자 : '95. 5. 2

마. 상정일자 : 제29회의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95.5.4.) 상정, 질의토론, 채택

2. 청원요지

본 청원은 연립과 단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불량주택으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만들어 재건축할 수 있다는 확정은 되었어도 현재 도로가 25년전부터 20미터 도시계획도

로 미개설로 서울시 기책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 철도부지 4미터 도로를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통행하고 있으나 재건축을 위한 법정도로 6미터를 확보치 못한 때문에 그 동안 노력한 영세민의 재건축사업 꿈이 무산되게 되어 관련부서로 하여금 도시계획 도로를 확보하여 조속히 재건축을 위한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임.

3. 취지설명의 요지 (소개의원 김유현 의원)

본 청원은 연립과 단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불량주택으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만들어 재건축할 수 있다는 확정은 되었어도 현 재 도로가 25년전부터 20미터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서울시 기책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 철도부지 4미터 도로를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통행하고 있으나 재건축을 위한 법정도로 6미터를 확보치 못한 때문에 그 동안 노력한 영세민의 재건축사업 꿈이 무산되게 되었으니 관련부서로 하여금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여 조속히 재건축을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청원인과 더불어 요망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에 의하여 접수 심사하게된 본 청원의 내용은 20m 계획도로와 접해있는 불량주택 32세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재건축의 추진이 무산될 상황에 이르러 20m 도로의 부분개설이라도 현시점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건축에 필요한 6m 진입도로의 개설만이라도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성원주택 재건축지역에 접한 도로의 개설은 인근 유원아파트와 비만

오면 침수되어 고통을 받아왔던 지역 실정을 고려할 때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재건축의 입지요건인 6m 진입도로의 개설요구만이라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서울시와 철도청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청원인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및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종만 위원) : 재건축을 하려면 꼭 6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가?
- 답변요지(이상환 토목과장) : 300세대미만의 재건축은 꼭 6미터를 확보해야함.
- 질의요지 (이천규 위원) : 재건축을 하려는 곳이 어떤 지역인가?
- 답변요지 (이상환 토목과장) : 연립이 1동 있고 단독주택이 10여동 있음.

6. 토론요지

김종열 위원장 :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제의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의견 : 별첨

10. 기타사항 : 없음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

○본 청원은 20m 계획도로와 접해있는 불량주택 32세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무산될 상황에 이르러 재

건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도로 만이라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동지역 여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근 유원아파트와 성사중학교의 신축시 복토로 인하여 사방지대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낮아진 지역으로, 그 동안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낙후지역으로서 주민들은 침수피해로 인한 피해의식은 물론 행정기관

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한 바, 주민 화합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서도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규정된 최소한의 도로라도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협의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요 지 서

접수년월일	1995. 5. 2.		접수번호	
청원인	주 소	마포구 성산2동 123-23	성 명	윤만우외 29인
소개의원	김 유 현 의원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건 명	성원주택 재건축을 위한 도로개설요구에 관한 청원			

요 지

본 청원은 연립과 단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불량주택으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만들어 재건축 할 수 있다는 확정은 되었어도 현재 도로가 25년 전부터 20m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서울시 기책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 철도부지 4m 도로를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통행하고 있으나 재건축을 위한 법정 도로 6m를 확보치 못한 때문에 그 동안 노력한 영세민의 재건축 사업 꿈이 무산되게 되어 관련부서로 하여금 도시계획 도로를 확보하여 조속히 재건축을 위한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임.